112신고처리법 - 피난명령

지난명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▶ 제8조(112신고에 대한 조치)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・재해,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○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토록 하는 행정처분 ○ 경직법 제5조의 '억류·피난'은 천재·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 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로 요건이 제한 ○ 다양한 사건·사고를 취급하는 112신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○ 거부할 경우 강제로 처벌할 규정 無 → 현장에서는 경직법 '억류・피난'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

구분	경직법(제5조)	112신고처리법(제8조제4항)
주체	경찰관	경찰청장등 (경찰청장·시도청장·경찰서장)
요건	생명·신체에 위해,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, 사변,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, 교통사고, 위험물의 폭발,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, 극도의 혼잡,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	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·재해,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
	AND 매우 긴급한 경우	사람의 생명·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
조치 범위	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	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

※ 112신고차리법은 112신고를 차리하는 괴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람의 생명·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피난명령이 가능해 위험 지역 내 질서유지와 국민의 안전 확보 가능

도로교통법

▶ 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

그 밖에 경찰의 위험 발생 조치에 관한 규정 ④ 도로의 파손, 화재의 발생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, 차마 등 통행을 일시 금지, 제한할 수 있다.

경비업법 시행령

- ▶ 제30조(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)
- ①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직법 제5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.